

「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」 심사보고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7. 10. 30 (화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7. 11. 05(월)

다. 상정일자 : 2007. 11. 05(월) 제143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7.11.05)상정·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)

가.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지원대상(안 제3조)

- 지원대상을 국민건강보험료가 월1만원 이하인 세대 중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

○ 예산지원(안 제4조)

- 지원범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.

○ 지원대상 선정(안 제5조)

- 지원대상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결정

○ 지원방법(안 제6조)

- 지원방법은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납부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이상진)

가.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추진되는 사항으로

나. 주요 검토내용을 살펴보면

-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인 세대중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대하여,
-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자료를 받아 대상을 선정 후,
-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전국 자치단체 입법사례를 조사한 결과 약 88개 자치단체에서 저소득노인세대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입법한 사례가 있었으며, 강원도내에서는 10개 시·군에서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,
- 우리군내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구성비율이 전체 노인인구의 10.5%로서, 약 799세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- 기타, 조례제명, 본칙, 부칙 등 조례의 규정형식 검토결과 적정하고,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관련 고유사무로서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내에서 입법되는 사례로 판단됨.

다. 결과적으로,

-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1부. 끝.